

영등포구의회
제17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용범의원 대표발의】



2013. 2. 2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82호로 2013년 2월 18일 김용범의원 외 6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인권에 관한 구민의 권리 및 의무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인권 정책에 관한 기본책무를 정하고, 인권증진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다.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명시(안 제6조)
- 라.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안 제7조)
- 마.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안 제16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수준향상을 위해 구와 사업장, 기관 및 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증진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4조에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또는 권장 하고,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인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은 우리 국민의 인권보장과 수준 향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하위 법령인 자치구 조례의 특성상 다소 선언적 의미로 비취 질 수 있으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민 인권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인권증진 활동에 이바지 하는 각종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